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

목	ᅔ

제1장 총칙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평가의 실시4
제3조 연간계획의 제출
제4조 결과보고서의 제출5
제5조 평가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제6조 평가항목
제7조 평가등급
제8조 평가의 실시
제9조 평가결과의 사전통보
제10조 소명자료 제출
제3장 평가위원회11
제11조 평가위원회의 심의 요청
제12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 위원의 임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5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 평가위원회 심의 등
제17조 심의점수 산정
제18조 심의의결 등
제19조 심의결과 통보
제4자 평가격과 보고 및 조치17

정밀진단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

2023.12.28. 제정(규정 제145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이하 "국토교통부고시"라 한다)에서 정하는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의 절차 및 기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본과업"이란 정밀진단·성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 2. "안전성"이란 철도시설의 요구조건 하에서 인명의 사상, 철도시설의 손상과 손실을 방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 3. "내구성"이란 철도시설의 사용수명 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철도시설의 성능을 말한다.
- 4. "사용성"이란 철도시설의 사용과 수요 측면에서 적절한 편의와 기능을 제공하는 성능을 말한다.
- 5. "선택과업"이란 정밀진단·성능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현지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 6. "성능평가"란 철도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안 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졸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7. "성능등급" 또는 "성능평가등급"이란 성능평가지수를 활용하여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 8. "성능지수" 또는 "성능평가지수"란 성능평가항목의 평가결과와 중요도 가중치를 곱하여 계량화한 지수를 말한다.

- 9. "선로 및 건축시설"은 구조물, 궤도시설 및 건축물을 말하며, "전기설비"란 전철전력, 신호제어 및 정보통신 설비로 구분될 수 있는 철도시설을 말한다.
- 10. "정밀진단·성능평가실시자"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철도시설관리자 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말한다.
- 11. "정기점검"이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 12. "정기점검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정기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말한다.
- 13. "정밀진단"이란 철도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물리적 안전성과 성능저하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 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 14. "주도급기관"이란 정밀진단·성능평가를 공동 도급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의미하며, 지분율이 동일할 경우 해당 정밀진단·성능평가의 용역책임자가 소속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된다.
- 15. "철도시설관리자"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6.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란 법 제44조의9 및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란 한다) 제34조의5 제2호에 따라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의 궤도 및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평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 17. "평가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이 규정에 제시 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과보고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평가의 실시

- 제3조(연간계획의 제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 실시할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연간계획을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며, 평가기관은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과 변경사유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고시 제39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은 제출받은 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정·보완을 통보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14일 이내 연간계획을 수정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밀진단 ·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수행 실적
- 2. 정밀진단 · 성능평가 차년도 시행계획
- 3. 국토교통부고시 제17조제4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 세부 기준
- 4. 기타 정밀진단 · 성능평가 결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④ 제1항에 따라 연간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수정토록 요구한 계획이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기관이 현장검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제5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시행령 제34조의5에 제시된 평가 분야 및 국토교통부고 시 별표1의 철도시설 분류인 궤도,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분야에 따라 각각 결과보고서를 구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시행령 제34조의5에 따른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결과평가 의뢰서 등을 서면 또는 저자무서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출된 결과보고서는 평가결과 통보 시까지의 평가기가 중 수정·보완할 수 없다.
- 제5조(평가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① 이사장은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정밀진단·성능평가실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정밀진단·성능평가실시자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추가자료가 필 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진단·성능평가실시자에게 제출토록 요구한 자료(보완자료 포함)가 요구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항목) ①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은 각각 국 토교통부고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평가에 대한 세부사 항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1. 정밀진단 평가항목 및 배점
- 가. 진단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 5점
- 나. 보수·보강. 고장·장애 이력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의 적정성: 10점
- 다.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15점
- 라. 각종 시험·분석의 적정성: 10점
- 마. 구조(설비)해석 및 안전성 검토 등의 적정성: 15점
- 바.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분석의 적성성: 10점
- 사. 평가결과의 적정성: 15점
- 아. 안전조치 및 보수 · 보강 방법의 적정성: 10점
- 자, 종합결론의 적정성: 10점
- 2. 성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가. 평가계획 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5점
- 나. 자료수집 및 분석의 적정성: 5점

- 다.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선정의 적정성: 10점
- 라. 안전성 평가의 적절성: 10점
- 마, 내구성 평가의 적절성: 10점
- 바. 사용성 평가의 적절성: 10점
- 사, 성능평가 결과의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의 적정성: 15점
- 아. 종합평가 결과의 적정성: 15점
- 자. 철도시설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 전략 제안의 적정성: 15점
- 차. 종합결론의 적정성: 5점
- ② 제1항의 평가항목 중 국토교통부고시 제35조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대한 중요 평가항목(이하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밀진단 중요평가항목: 제1항제1호다목, 마목 및 사목
- 2. 성능평가 중요평가항목: 제1항제2호사목, 아목 및 자목
- 제7조(평가등급)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등급은 국토교통부고시 제36조와 같이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구분한다.
- 1. 적정: 해당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70점 이상이고, 중요평가항목의 평가점수 중 해당 항목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었는 경우
- 2. 미흡: 해당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평가점수의 총점이 65점 이상 70점 미만이거나, 중 요평가항목의 평가점수 중 해당 항목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1개인 경우
- 3. 불량: 해당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일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평가점수의 총점이 60점 이상 65점 미만이거나, 중요평가항목의 평가점수 중해당 항목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2개인 경우
- 4. 매우 불량: 해당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실시결과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평가점수의 총점이 60점 미만이거나, 중요평가항목의 평가점수 중 해당 항목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3개인 경우
-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이사장은 별표 1에 제시된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별표 2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고시 제37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업무에서 제척하 여야 한다.

- 1. 정밀진단 · 성능평가실시자와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3. 해당 정밀진단 · 성능평가실시자가 의뢰한 용역(하도급 포함)자문 등을 수했한 경우
-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결과보고서가 국토교통부고시 제38조제1항제1조에 따라 평가대상 또는 항목의 누락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이사 장은 해당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그 사유 등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조사보고서 를 작성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에 대한 실시 범위나 주요항목이 법령에 위배된 경우
- 2. 다음 각 목과 같이 국토교통부고시 제35조제1항에 따른 평가 규정에 미흡하게 작성 된 경우
-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35조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에서 정한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였거나 누락한 경우
-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35조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에서 정한 조사·분석 또는 평가 등 과업의 주요항목을 누락시킨 경우
- ③ 이사장은 국토교통부고시 제37조제2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결과보고서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는지를 확인(이하 "사실관계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밀진단·성능평가를 실시한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 등에게 사실관계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밀진단·성능 평가실시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제24조 운영방침에 따른 평가매뉴얼을 기준으로 수행하 되 철도시설관리자의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및 제5항에 따

- 른 평가 시 필요한 경우 등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⑤ 이사장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접수된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제7조에 따라 "적정",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⑥ 평가등급이 "미홉", "불량", 또는 "매우 불량"일 경우 결과보고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심의 대상이 된다.
- 제9조(평가결과의 사전통보) ① 이사장은 제8조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가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가 사전통보서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철도시설관리자
- 2.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공동으로 도급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주도급기관을 말한다)
- 제10조(소명자료 제출) ① 이사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사전통보받은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평가내용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 터 14일 이내에 이사장에 평가내용 등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소명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는 경우에 한한다.
- 1. 법, 시햇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고시 또는 이 규정과 다르게 평가된 경우
- 2. 평가결과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평가된 경우
- ③ 소명자료를 제출한 정밀진단·성능평가실시자는 평가위원회 심의 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석 안내는 이사장이 정밀진단·성능평가실시자에게 통지한다.

제3장 평가위원회

제11조(평가위원회의 심의 요청) ① 이사장은 제8조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37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심 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결과보고서 및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진단·성능평가실시자의 소명자료가 제출된경우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장은 시행령 제34조의5에 따른 소관 분야 평가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 사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속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철도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 2. 철도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ㆍ직원
- 3. 철도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그 밖에 이사장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이사장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피성년후견인
- 2. 법 및 「철도안전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철도시설 관련법령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건설 관련법령 위 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급형을 선고받은 자
- 3. 평가기관에 재직 중인 임직원
-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결원으로 신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거나 평가위원회를 운영할수 없을 때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시설의 기능적·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할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평가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설물 분야별 전문가로 소위원회 위원(이하 "소위원"이라 하다)을 구성하다.
- ⑤ 소위원장은 소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 제16조(평가위원회 심의 등) ① 위원장은 이사장이 심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추가 검토사항에 대한 자료보완 요청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심의를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제척한다. 다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제척한다.
- 1. 평가 대상 정밀진단·성능평가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심의 또는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2. 평가위원회 심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 3. 평가 대상 정밀진단·성능평가를 수행한 정밀진단·성능평가실시자가 속한 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최근 2년 이내 재직한 이력이 있는 경우
-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

우

- ③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 대상 정밀진단·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실관계조사를 하거나 해당 평가업무를 수행한 관계자 등에게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정밀진단·성능평가실시자의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정밀진단·성능평가실시 자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평가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사실관계조사를 할 경우 이사장은 이에 필요한 인력, 경비 등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심의점수 산정) ①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심의할 경우의 심의항 목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을, 중요심의항목은 제6조제2항의 중요평가항목을 준용한다.
- ②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서(이하 "심의서"라 한다)를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심의위원들이 제출한 심의서의 심의점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상하고 심의점수 중 최상위 및 최하위의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 심의점수로 결정한다.
- ④ 심의위원이 심의의결 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제출된 심의서 내용을 심의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8조(심의의결 등) ① 평가위원회는 해당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심의서가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도 해당 심의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평가위원회가 심의대상인 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서에 의하여 산정된 심의점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

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 1. 적정: 해당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점수의 총점이 70점 이상이고,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없는 경우
- 2. 미흡: 해당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점 수의 총점이 65점 이상 70점 미만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 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1개인 경우
- 3. 불량: 해당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일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점수의 총점이 60점 이상 65점 미만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2개인 경우
- 4. 매우 불량: 해당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실시결과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평가점수의 총점이 60점 미만이거나, 중요평가항목의 평가점수 중 해당 항목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3개인 경우
- ③ 평가위원회가 제2항의 '미홉',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적내용(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9조(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장은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 청할 수 있다.

제4장 평가결과 보고 및 조치

- 제20조(평가결과 보고) ① 이사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평가결과를 별지 제 10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정밀진단·성능평가실시자 및 지도·감 독기관에게 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밀진단·

성능평가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수행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주도급기관에게 평가결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정밀진단·성능평가실시자는 이사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 및 지도·감독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재심의를 실시하는 경우 최초 평가위원회 심의 시와 동일한 절차로 심의를 진행하며, 평가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당초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의위원 제외)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비밀의 엄수) 심의위원(위원장 포함), 공단의 임원·직원 등을 포함한 평가업무 관계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업무 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심의비 및 여비지급 등) ① 평가심의 또는 자문 등의 업무수행을 한 사람에게 평가기관의 예산 범위 안에서 심의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업무 또는 사실관계조사 수행시 필요한 소요경비는 평가 기관의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23조(서류의 보존) 결과보고서 평가와 관련되는 서류(관련자료를 포함한다)는 평가완료 보고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24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3조의2제3항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38조제2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성능평가실시자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등급이 '미홉',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평가 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간 내에 수정하거나 보완한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도・

감독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이사장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3개월 이내
- 2.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2개월 이내
- ③ 제2항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한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이사장은 수정이나 보완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제25조(운영방침)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업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평가제도 개선 등

- 제26조(평가제도 개선 등) ① 이사장은 결과보고서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결과보고서 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결과보고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타 분야 및 해외 철도에 대한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결과보고서 평가 제도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방안을 지속 연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1456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결과보고서 평가항목에 관한 특례)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항목은 2023년 12월 22일 개정된 국토교통부고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국토교통부고시(2023.12.22. 개정) 시행 전에 착수된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경우: 국토교통부고시(2022.11.30. 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시행
- 국토교통부고시(2023.12.22. 개정) 시행 이후에 착수된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 서 경우: 국토교통부고시(2023.12.22. 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시행
- 제3조(연간계획 제출 시기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고시 제39조(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계획 제출 등) 및 제3조(연간계획의 제출)에 따른 최초의 철도시설관리자 연간계획은

국토교통부고시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발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4 -

■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 [별표 1]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

정밀진단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관의 요건(제8조제1항 관련)

1. 자격요건

자격요건	구분								
사격호신	궤도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궤도 관련업무 5년 이상 경력자	0								
전철전력 관련업무 5년 이상 경력자		0							
신호제어 관련업무 5년 이상 경력자			0						
정보통신 관련업무 5년 이상 경력자				0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소지자		해당분야	평가 가능						
해당분야 관련 기술사·박사학위 취득자	해당분야 평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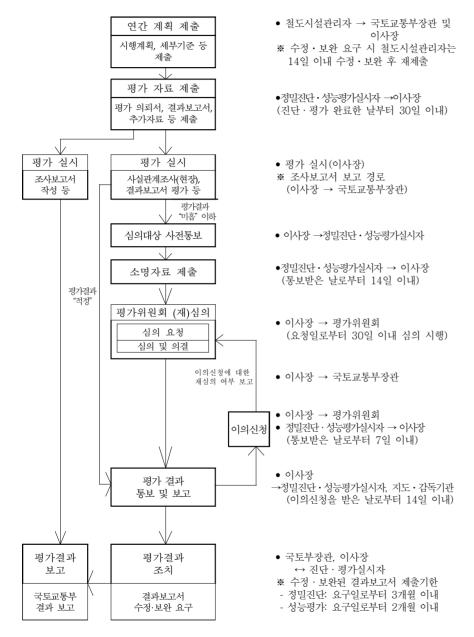
비고 1. 관련업무란 해당 분야에서 실시한 연구·설계·건설·진단·평가·유지관리 등 업무를 말한다.

2. 교육요건

	교육내용	교육시간
가. 정밀 진단	 철도시설 일반 정밀진단 방법 및 기술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평가 요령 	32시간
나. 성능 평가	 철도시설 안전성, 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방법 성능등급 산정 등 종합평가 방법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요령 	8시간

- 비고 1.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교육과정은 궤도, 전철전력, 신호제어 및 정보통신 분야로 구분한다.
 - 2.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31조제2항에 제시된 교육요건을 이수한 자의 경우 제2호의 교육요 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의뢰서

■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	기재하지 않음	코드번호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정한 시설 중분류 코드번호
시설물 구분	궤도,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중 택1	시설물 종류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또는 참고자료 제1호에 따른 중분류

용역명			
진단 • 평가기간	0000.00.00~0000.00.00	계약일 (해당 시)	0000.00.00
완료일 (해당 시)	0000.00.00	발주금액 (해당 시)	- 원
진단 • 평가기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 전문기관의 명칭	한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251117777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	
철도시설관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성능평가)를 완료하고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오니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0000년 00월 00일

제출자 철도시설관리자 (서명 또는 인)

평가 의뢰시설물

(참고.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또는 참고자료 제1호, 코드번호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정한 코드번호 기재)

시설물명(중분류)	코드번호	수량	시설물명(중분류)	코드번호	수량

Γ	관련 자료										
	(필수. "제출형식" 보고서 등은(*.pdf, *.hwp)로 가중치 세부 계산 등은 (*.xlsx) 전자파일로 제출)										
	자료명	제출 형식	자료명	제출 형식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평가서

궤도

			• • • • • • • • • • • • • • • • • • • •	<u> エ</u>						
			평기	·척도	(B)					
평가항목	기중치 (A)	우수	적정	보통	미흡	불량	배점 (A×B)	평가 결과 요약		
	(A)	5	4	3	2	1	(A^D)			
1.진단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										
• 보고서 작성 체계의 적정성	0.4									
• 대상 궤도 및 과업 이해도의 적정성	0.2									
• 정밀진단 계획의 적정성	0.2									
• 정밀진단 투입 인력 및 장비의 적정성	0.2									
2.보수ㆍ보강, 고장ㆍ장애 이력 등	에 관	한 자	료수집	및 ·	분석의	적정	성			
• 설계도서 및 시공자료 등 조사의 적정성	0.6									
· 보수 · 보강, 사고 · 장애 등	1.4									
조사•분석의 적정성	1.4									
3.현장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현장조사의 적정성	1.0									
· 기존 점검 · 진단 · 평가 결과	2.0									
조사·분석의 적정성	2.0									
4.각종 시험 • 분석의 적정성										
• 현장 비파괴시험 등 각종	2.0									
시험·분석의 적정성										
5.구조(설비)해석 및 안전성 검토	등의	적정성								
• 중대한 결함 선정 등	1.0									
구조(설비)해석의 적정성	1.0									
•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2.0									
6.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분	석의	적정성	덬							
○ 외관 손상 조사 및 원인 분석의 □ 적정성	1.0									
주요 결함 발생 원인 분석의 적정성	1.0									
7.평가 결과의 적정성										
∘ 궤도의 안전성능 평가의 적정성	2.0									
· 안전성능등급의 적정성	1.0									
8.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덬								
· 안전조치의 적정성	0.6									
·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0.6									
•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0.8									
9.종합결론의 적정성										
• 종합결론의 적정성	2.0									
평 가 점 수										
(100점 만점)										

참고사항

1. 대상시설물의 특성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본 서식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음.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평가서

전철전력 • 정보통신 • 신호제어

	평가척도 (B)										
평가항목	フ중치 (A)	우수	적정	보통	미흡	불량	배점	평가 결과 요약			
	(A)	5	4	3	2	1	(A×B)				
1.진단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											
· 보고서 작성 체계의 적정성	0.4										
• 대상 설비 및 과업 이해도의 적정성	0.2										
• 정밀진단 계획의 적정성	0.2										
• 정밀진단 투입 인력 및 장비의 적정성	0.2										
2.보수・보강, 고장・장애 이력 등	에 관	한 자	료수집	및	분석으	적정	성				
• 설계도서 및 시공자료 등 조사의 적정성	0.6										
◦ 보수 • 보강, 사고 • 장애 등 조사 • 분석의 적정성	1.4										
3.현장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현장조사의 적정성	1.0										
· 기존 점검 · 진단 · 평가 결과	0.0										
조사·분석의 적정성	2.0										
4.각종 시험 • 분석의 적정성											
• 현장 비파괴시험 등 각종	2.0										
시험·분석의 적정성											
5.구조(설비)해석 및 안전성 검토	등의 -	적정성	!								
· 설비해석 검토등의 적정성	1.0										
· 안전성 검토 등의 적정성	2.0										
6.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분	석의	적정성	릭								
· 외관 결함(손상) 조사 및 원인 분석의 적정성	1.0										
· 주요 결함·장애 발생 원인	1.0										
분석의 적정성	1.0										
7.평가 결과의 적정성											
• 설비의 안전성능 평가의 적정성	2.0										
· 안전성능등급의 적정성	1.0										
8.안전조치 및 보수 보강 방법의	적정성	덬									
· 안전조치의 적정성	0.6										
· 보수 · 보강 방법의 적정성	0.6										
·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0.8										
9.종합결론의 적정성											
• 종합결론의 적정성	2.0										
평 가 점 수 (100점 만점)											

참고사항

1. 대상시설물의 특성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본 서식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음.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서

궤도

			774 T	I FI C	(D)			
필리하다	기중치	0.4	벙기	<u> </u>	(B)	нэь	배점	=== ===================================
평가항목	(A)	주수	식성	구동	미읍	불량	(A×B)	평가 결과 요약
	T1 T1 11	5	4	3	2	1		
1.평가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 보고서 작성 체계의 적정성	0.2							
• 대상 궤도 및 과업 이해도의 적정성	0.2							
· 성능평가 계획의 적정성	0.4							
· 성능평가 투입 인력 및 장비의 적정성	0.2							
2.자료수집 및 분석의 적정성	0.4							
• 설계도서 및 시공자료 등 조사의 적정성	0.4							
○ 기존 점검·진단·평가 결과 조사·분석의 적정성	0.6							
3.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선정의 적정	성성							
• 성능목표 선정의 적정성	1.0							
• 관리지표 선정의 적정성	1.0							
4.안전성 평가의 적절성								
○ 주요 결함(손상) • 외관 조사 및 원인 분석의 적정성	0.6							
현장 비파괴시험 등 각종 시험・분석의 적정성	0.8							
• 궤도의 안전성평가의 적정성	0.6							
5.내구성 평가의 적절성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분석 및 결과의 적정성	0.8							
• 재료의 내구성능 분석 및 결과의 적정성	0.8							
• 궤도의 내구성능 평가 결과의 적정성	0.4							
6.사용성 평가의 적절성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분석 및 결과의 적정성	0.8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 분석	0.8							
• 궤도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의 적정성	0.4							
7.성능평가 결과의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	의 작	정성				
성능평가 결과의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의 적정성	3.0							
8.종합평가 결과의 적정성								
• 궤도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 결과 분석의 적정성	1.0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종합한 종합성능등급의 적정성	2.0							
9.철도시설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	지관리	전략	제인	의 작	정성			
∘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2.0							
·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1.0							
10.종합결론의 적정성								
· 종합결론의 적정성	1.0							
평 가 점 수 (100점 만점)								

참고사항

1. 대상시설물의 특성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본 서식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음.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서

전철전력 • 정보통신 • 신호제어

			774 -	1710	(D)			
평가항목	기중치 (A)	우수 5	평기 적정 4	ト척도 보통 3	(B) 미흡 2	불량 1	배점 (A×B)	평가 결과 요약
1.평가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							
• 보고서 작성 체계의 적정성	0.2							
• 대상 설비 및 과업 이해도의 적정성	0.2							
• 성능평가 계획의 적정성	0.4							
• 성능평가 투입 인력 및 장비의 적정성	0.2							
2.자료수집 및 분석의 적정성								
• 설계도서 및 시공자료 등 조사의 적정성	0.4							
기존 점검・진단・평가 결과 조사・분석의 적정성	0.6							
3.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선정의 적정	정성							
· 성능목표 선정의 적정성	1.0							
· 관리지표 선정의 적정성	1.0							
4.안전성 평가의 적절성								
 주요 결함(손상) • 외관 조사 및 원인 분석의 적정성 	0.6							
현장 비파괴시험 등 각종 시험 • 분석의 적정성	0.8							
• 설비의 안전성능 평가의 적정성	0.6							
5.내구성 평가의 적절성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분석 및 결과의 적정성	0.8							
• 재료의 내구성능 분석 및 결과의 적정성	0.8							
• 내구성능 평가 결과의 적정성	0.4							
6.사용성 평가의 적절성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분석 및 결과의 적정성	1.4							
• 사용성능 평가 결과의 적정성	0.6							
7.성능평가 결과의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	1의 직	걱정성				
성능평가 결과의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의 적정성	3.0							
8.종합평가 결과의 적정성								
설비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 결과 분석의 적정성	1.0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종합한 종합성능등급의 적정성	2.0							
9.철도시설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	지관리	전략	제인	의 작	정성			
。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2.0							
•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1.0							
10.종합결론의 적정성								
· 종합결론의 적정성	1.0							
평 가 점 수 (100점 만점)								

참고사항

1. 대상시설물의 특성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본 서식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음.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조사보고서

1. 시설물 진단(평가)개요

과업명	검토자	소속 : 직위 :
		성명 :
	철도시설관리자	
	준공년도	
시설물 개요	진단(평가)기간	
	계약금액	
	성능등급	

가, 진단(평가)실시결과 확인내용

지침ㆍ규정 기준	과업지시서 내용	진단(평가) 실시결과

나. 누락(미흡)사유 및 철도시설관리자 조치계획

	o 누락(미흡)사유
l	
l	
l	
ı	0 철도시설관리자 조치계획
ı	
ı	
ı	

다. 평가기관 검토의견

※ 검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음.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평가 사전통보서

□ 철도시설 정밀진단 개요

철도시설명		평 가 관	
-------	--	-------	--

□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평가결과

- 1. 진단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
- 1) 검토내용
- 2) 개선필요사항
- 2. 보수·보강, 고장·장애 이력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의 적정성
- 1) 검토내용
- 2) 개선필요사항
- 3.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1) 검토내용
- 2) 개선필요사항
- 4. 각종 시험 분석의 적정성
- 1) 검토내용
- 2) 개선필요사항
- 5. 구조(설비)해석 및 안전성 검토 등의 적정성
- 1) 검토내용
- 2) 개선필요사항
- 6.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분석의 적정성
- 1) 검토내용
- 2) 개선필요사항
- 7. 평가결과의 적정성
- 1) 검토내용
- 2) 개선필요사항
- 8. 안전조치 및 보수 · 보강 방법의 적정성

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음)

- 1) 검토내용
- 2) 개선필요사항
- 9. 종합결론의 적정성
- 1) 검토내용
- 2) 개선필요사항

□ 종합의견

| | ※ 종합의견에 주요 개선 필요사항과 철도시설의 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검토 내용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사전통보서

П	첰	두人	l성	성능	- 편 :	71-	개	S

철도시설명	평 가 관	
-------	-------	--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결과

- 1. 평가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
- 1) 검토내용
- 2) 개선필요사항
- 2. 자료수집 및 분석의 적정성
- 1) 검토내용
- 2) 개선필요사항
- 3.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선정의 적정성
- 1) 검토내용
- 2) 개선필요사항
- 4. 안전성 평가의 적절성
- 1) 검토내용
- 2) 개선필요사항
- 5 내구성 평가의 적절성
- 1) 검토내용
- 2) 개선필요사항
- 6. 사용성 평가의 적절성
- 1) 검토내용
- 2) 개선필요사항
- 7. 성능평가 결과의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의 적정성
- 1) 검토내용
- 2) 개선필요사항
- 8. 종합평가 결과의 적정성
- 1) 검토내용
- 2) 개선필요사항
- 9. 철도시설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 전략 제안의 적정성
- 1) 검토내용
- 2) 개선필요사항
- 10. 종합결론의 적정성
- 1) 검토내용
- 2) 개선필요사항

П	종	하의	기견

※ 종합의견에 주요 개선 필요사항과 철도시설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검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음)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심의요청서

정밀진단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및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등급이 (미흡, 불량, 매우 불량)으로 사전 평가된 아래의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 서에 대한 평가 심의를 요청합니다.

- 1. 철도시설명 :
- 2. 철도시설관리자 :
- 3. 관련서류 : 붙임 참조

- 붙임 1.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1부.
 - 2.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보고서 1부.
 - 3. 기타 관련서류 1부. 끝.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심의서

궤도

n-															
	기조위		기즈위			싣	님으	척	도	(B)			배점	TIZILIO
평가항목	가중치 (%)	세부평가항목	기중치 (A)	우수	-	적경	정	보	통		흡	불	량	매심 (A×B)	지적내용 요약
	(70)		(A)	10	9	8	7	6	5	4	3	2	1	(-V-U)	Ψ-7
		• 보고서 작성 체계의 적정성	0.2		T										
1.진단계획 수립 및 보고서	5	대상 궤도 및 과업 이해도의 적정성	0.1												
ᆾ 포고시 체계의 적정성	3	정밀진단 계획의 적정성	0.1												
		정밀진단 투입 인력 및 장비의 적정성	0.1												
2.보수 • 보강, 고장 • 장애 이력 등에 관한	10	설계도서 및 시공자료 등조사의 적정성	0.3												
자료수집 및 분석의 적정성	10	∘ 보수·보강, 사고·장애 등 조사·분석의 적정성	0.7												
3.현장조사 및		• 현장조사의 적정성	0.5												
결과분석의 적정성	15	기존 점검・진단・평가 결과 조사・분석의 적정성	1.0												
4.각종 시험 • 분석의 적정성	10	현장 비파괴시험 등 각종 시험・분석의 적정성	1.0												
5.구조(설비)해석 및 안전성	15	 중대한 결함 선정 등 구조(설비)해석의 적정성 	0.5												
검토의 등의 적정성	15	·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1.0												
6.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10	외관 손상 조사 및 원인 분석의 적정성	0.5												
분석의 적정성	10	주요 결함 발생 원인 분석의 적정성	0.5												
7.평가 결과의 적정성	15	궤도의 안전성능 평가의 적정성	1.0												
700		· 안전성능등급의 적정성	0.5												
8.안전조치 및		· 안전조치의 적정성	0.3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10	· 보수 · 보강 방법의 적정성	0.3												
		·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0.4		4										
9.종합결론의 적정성	10	· 종합결론의 적정성	1.0												
평 가 점 수 (100점 만점					_		_	_	_	_	_	_	_		

참고사항

1. 대상시설물의 특성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본 서식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음.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심의서

전철전력 • 정보통신 • 신호제어

	-11		-1 - - 1			싣	10	칙	도	(B)			+1	TITLUI 0
평가항목	가중치 (%)	세부평가항목	가중치 (A)	우	수	적	정	보	통		흡	불	량	배점 (A×B)	지적내용 요약
	(/0)		(A)	10	9	8	7	6	5	4	3	2	1	(4^0)	
		• 보고서 작성 체계의 적정성	0.2												
1.진단계획 수립 및 보고서	_	대상 설비 및 과업 이해도의 적정성	0.1												
½ 포고시 체계의 적정성	5	· 정밀진단 계획의 적정성	0.1												
		정밀진단 투입 인력 및 장비의 적정성	0.1												
2.보수 • 보강, 고장 • 장애 이력 등에 관한	10	설계도서 및 시공자료 등조사의 적정성	0.3												
자료수집 및 분석의 적정성	10	∘ 보수 • 보강, 사고 • 장애 등 조사 • 분석의 적정성	0.7												
3.현장조사 및		· 현장조사의 적정성	0.5												
결과분석의 적정성	15	기존 점검・진단・평가 결과 조사・분석의 적정성	1.0												
4.각종 시험 • 분석의 적정성	10	∘ 현장 비파괴시험 등 각종 시험 • 분석의 적정성	1.0												
5.구조(설비)해석 및 안전성	15	• 설비해석 검토등의 적정성	0.5												
검토의 등의 적정성	13	•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1.0												
6.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10	외관 결함(손상) 조사 및원인 분석의 적정성	0.5												
분석의 적정성	10	주요 결함・장애 발생 원인 분석의 적정성	0.5												
7.평가 결과의 적정성	15	· 설비의 안전성능 평가의 적정성	1.0												
700		• 안전성능등급의 적정성	0.5												
8.안전조치 및		• 안전조치의 적정성	0.3												
보수 · 보강 방법의 적정성	10	·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0.3												
		•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0.4			_				_	_				
9.종합결론의 적정성	10	· 종합결론의 적정성	1.0												
평 가 점 수 (100점 만점				_			_	_	_	_	_	_			

참고사항

1. 대상시설물의 특성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본 서식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음.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심의서

궤도

		Г	ᅦᅩ												
	-1 -1		-1×-1			싣		척	도	(B)			베저	되저네요
평가항목	가중치 (%)	평가점수	기중치 (%)	우	수	적	정	보	통		흡	불	량	배점	지적내용
	(/0)		(/6)	10	9	8	7	6	5	4	3	2	1	(A×B)	요약
		• 보고서 작성 체계의 적정성	0.1												
1.평가계획 수립 및 보		대상 시설물 및 과업 이해도의 적정성	0.1												
고서 체계의 적정성	5	· 성능평가 계획의 적정성	0.2												
		성능평가 투입 인력 및 장비의 적정성	0.1												
2.자료수집 및 분석의		설계도서 및 시공자료 등조사의 적정성	0.2												
적정성	5	• 기존 점검 • 진단 • 평가 결과 조사 • 분석의 적정성	0.3												
3.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 성능목표 선정의 적정성	0.5												
선정의 적정성	10	· 관리지표 선정의 적정성	0.5												
		주요 결함(손상) · 외관 조사및 원인 분석의 적정성	0.3												
4.안전성 평가의 적절성	10	현장 비파괴시험 등 각종 시험・분석의 적정성	0.4												
		• 궤도의 안전성평가의 적정성	0.3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분석 및 결과의 적정성	0.4												
5.내구성 평가의 적절성	10	재료의 내구성능 분석 및 결과의 적정성	0.4												
		궤도의 내구성능 평가 결과의 적정성	0.2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분석 및 결과의 적정성	0.4												
6.사용성 평가의 적절성	10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 분석	0.4												
		궤도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의 적정성	0.2												
7.성능평가 결과의 시설 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의 적정성	15	성능평가 결과의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의 적정성	1.5												
8.종합평가 결과의 적정	45	궤도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 결과 분석의 적정성	0.5												
d d	15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종합한 종합성능등급의 적정성	1.0												
9.철도시설의 성능목표		。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1.0												
를 고려한 유지관리 전 략 제안의 적정성	15	·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0.5												
10.종합결론의 적정성	5	· 종합결론의 적정성	0.5												
평 가 점 수 (100점 만점								_		_		_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심의서

전철전력 • 정보통신 • 신호제어

■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전불전력 * 영포증전 * 전호제이															
	-1 × -1		-1			1	님으	척!	도	(B)			배점	지적내용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점수	기중치	우	수	적	정	보통	통		흡	불	량		
	(%)		(%)	10	9	8	7	6	5	4	3	2	1	(A×B)	요약
		• 보고서 작성 체계의 적정성	0.1	- 1			_				Ť	Ē			
			0.1						-						
1.평가계획 수립 및 보	5	대상 설비 및 과업 이해도의 적정성	0.1												
고서 체계의 적정성	정성	• 성능평가 계획의 적정성	0.2												
		성능평가 투입 인력 및 장비의 적정성	0.1												
2.자료수집 및 분석의	_	설계도서 및 시공자료 등 조사의 적정성	0.2												
적정성	5	• 기존 점검 • 진단 • 평가 결과 조사 • 분석의 적정성	0.3												
3.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 성능목표 선정의 적정성	0.5												
선정의 적정성	10	• 관리지표 선정의 적정성	0.5												
		• 주요 결함(손상) • 외관 조사 및 원인 분석의 적정성	0.3												
4.안전성 평가의 적절성	10	• 현장 비파괴시험 등 각종 시험 • 분석의 적정성	0.4												
		• 설비의 안전성평가의 적정성	0.3												
		•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분석 및 결과의 적정성	0.4												
5.내구성 평가의 적절성	10	• 재료의 내구성능 분석 및 결과의 적정성	0.4												
		• 내구성능 평가 결과의 적정성	0.2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분석 및 결과의 적정성 	0.7												
6.사용성 평가의 적절성	10	설비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의 적정성	0.3												
7.성능평가 결과의 시설 별, 노선별, 구간별 분 석의 적정성	15	성능평가 결과의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의 적정성	1.5												
8.종합평가 결과의 적정	15	 설비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 결과 분석의 적정성 	0.5												
성	15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종합한 종합성능등급의 적정성	1.0												
9.철도시설의 성능목표		·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1.0												
를 고려한 유지관리 전 략 제안의 적정성	15	•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0.5												
10.종합결론의 적정성	5	• 종합결론의 적정성	0.5								\exists				
평 가 점 수 (100점 만점)						_	_	_	_	_	_	_		

정밀진단(성능평가)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롱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심의결과 1부. 끝.

20 . . .

정밀진단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 평가대상

1. 관리번호

2. 철도시설명 :

3. 철도시설관리자 :

4. 실 시 자 :

5. 실시기간 : ~

6. 계약금액¹ :

비고. (해당시) 철도시설관리자 자체 수행 이외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별 계약금액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결과

□ 평가내용

1. 평가결과 : 적정, 미흡, 불량, 매우 불량

2. 지적내용

(1)

(2)

(3)

(4)

3. (성능평가의 경우) 성능등급 변경 필요여부 및 그 사유 : 필요한 경우

4. 철도시설 중대한 결함 등 반영 필요여부 및 그 사유 : 필요한 경우

5. 지적내용에 대한 시정기간 : 필요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30 -

- 31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소명)신청서

1. 철도시설명				
2. 진단ㆍ평가기간				
3. 진단ㆍ평가기관				
4. 책임기술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5. 철도시설관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6. 평가결과	※ 미흡, 불량 또	는 매우 불링	· 중 해당하는	결과를 기입.
이의(소명)신청	사항		사유	
※ 이의(소명)신청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		명)신청 사유를 증빙

이의(소명)신청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이의(소명)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청 렴 서 약 서

소 속:

직 위:

성 명:

- 본인은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심의) 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해관 계자 또는 타인 등에게 일체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의결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중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결과 시정조치결과

1. 철도시설명				
2. 진단ㆍ평가기간				
3. 진단ㆍ평가기관				
4. 책임기술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5. 철도시설관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6. 시정내용	※ 통보받은 지적내용에 대	해 시정•보완한 조	치내용을 상세히 기술	
통보받 	은 지적내용	지적니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 조치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음.				
7. 철도시설관리자 확인	<u> </u>			
0 담당자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	
o 과리주체의 장 :			(서명 또는 이)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대상

7	궤도시설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도상	콘크리트도상		가공송전선로	열차검지장치	궤도회로장치	서크서비	광케이블
工公	자갈도상		지중송전선로		연동장치	선로설비	동케이블
	레일	소버져서비	교류변전기기 직류변전기기		폐색제어장치	- 전송설비 - 무선설비	광전송설비
레일	체결장치	송변전설비		열차제어장치	열차방호장치		PCM 다중화 장치
	신축이음매		제어설비		열차집중제어장치		중앙제어설비
	포인트부		부대설비		신호기 장치		중계기지국설비
분기기	리드부		합성전차선	선로전환기장치	선로전환기		터널중계설비
	크로싱부	- 전차선로 -	급전선		건널목 제어장치	전화교환설비	전화교환기
	목침목		장치류	건널목안전설비	건널목 전동차단기	역무통신설비	여객안내설비
침목	RC침목		지지물		건널목 경보기	410020	자동안내방송설비
	PSC침목		기기설비		열차보호 안전설비	HPYTYPU	여객관리용 영상설비
			안전보호설비	안전설비	방송설비	영상설비	시설감시용 영상설비
			배전선로		감시설비		전산장치
			전력기기			역무자동설비	발매기
		전력설비	제어설비				게이트
			조명설비				
			전기소방설비				

^{*} 국토교통부고시 제13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대상을 추가 수정·삭제할 수 있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서두 ○ 저불문 ○ 청밀진단 결과표 ○ 창명이 기술진 명단 ○ 제도의 전경시진, 구성품별 사진 ○ 청밀진단 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 청밀진단의 개요 ○ 정밀진단의 개요 ○ 정밀진단의 의목적 ○ 제도의 제요 및 이려사항 ○ 정밀진단 여행시계 ○ 정밀진단 수행시계 ○ 정밀진단 수행시점 ○ 선택과업 선정 근거 및 수행 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보존소사 방법 (표본조사 시) □ 자료수집 및 분석 ○ 설계도면, 설계도서 ○ 기존 점검 ·진단 ·평가 결과 ○ 보수 보강 교체, 사고 · 장애 이력 ○ 기타 관련자료 □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 설비 별 물리적 특성(마모·강도·소음·부식·균열·누유·경사·참 하 등)의 의관조사 결과의 적정성 검토 의 관조사망도의 적정성 ○ 대표조사 시) 현장실비 표본선정의 적정성 ○ 전자시 한자실비 표본선정의 적정성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 [참고자료 제2호]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 (4쪽 중 제2쪽)
궤도	전철전력 • 신호제어 • 정보통신
□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분석의 적정성 ○ 외관 손상 조사의 적정성 ○ 외관조사망도의 적정성 ○ 구조(설비)해석 결과를 통한 주요 결함 발생 원인 분석의 작정성	○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분석 ○ 외관 결함(손상) 조사 - 설비 별 외관 결함(손상) 및 원인분석 조사 결과의 적정 성 검토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 원인 분석 - 전(자)기적 • 물리적 특성 시험 결과 나타난 주요 결함 • 장 애 분석 결과의 적정성 검토 (이력 분석 포함 여부)
□ 평가결과의 적정성 ◦ 표본조사 방법의 적정성 (표본조사 시) - 표본선정 근거 및 수량의 적정성 검토 (통과톤수, 노반조건 (터널, 교량, 토공 등), 유지보수 이력, 타노선・타기관 사례, 기관 내규 등 반영 여부) ◦ 궤도 안전성능 결과 분석의 적정성 ◦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 결과의 적정성 ◦ 안전성능등급의 적정성	□ 평가결과의 적정성 □ 표본조사 방법의 적정성 (표본조사 시) □ 표본선정 근거 및 수량의 적정성 검토 (운행횟수, 외부환경(터널, 교량, 토공, 실내, 실외, 염해 등), 고장이력, 타노선・타기관 사례, 기관 내규 등 반영 여부) □ 설비의 안전성능 결과 분석의 적정성 □ 안전성능등급의 적정성
□ 궤도의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내진성능평가를 수반해야 할 경우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 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 안전조치의 적성성 ○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구성품에 대한 보수・보강 ・교체 방법 ○ 보수・보강・교체 방법의 개요, 시공방안 및 주의사항 ○ 당해 구간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요령 및 대책	□ 설비의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방안 ◦고장, 장애, 손상에 대한 보수·교체 방안 및 방법 ◦당해 구간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및 대책
□ 종합결론 ○ 정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종합 결론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차기 정밀진단 시 중점 점검 사항 ○ 건의사항	□ 종합결론 ◦ 정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종합 결론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차기 정밀진단 시 중점 점검 사항 ◦ 건의사항
□ 부록 ○ 정밀진단 실시계획서 ○ 대가산정기준 ○ 과업지시서 ○ 자체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 외관조사망도 ○ 궤도구성품의 역학적 특성 자료 ○ 궤도 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 측정, 시험, 계현 및 수치해석 자료 ○ 참정, 시험, 계현 사기조 ○ 안전성평가결과 자료 ○ 레도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현장조사 사진은 조사모습, 촬영일자가 육안으로 명확히 확인이 가능할 것)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및 검교정 자료 ○ 참여인력의 자격 증빙 ○ 사전조사 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진단 결과와 관련한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 점검, 진단 및 성능평가 보고서 등 관련자료포함)	□ 부록 ○ 정밀진단 실시계획서 ○ 대가산정기준 ○ 과업지시서 ○ 자체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 설비별 외관조사도 ○ 관구도(신호제어 시설) ○ 연동도표(신호제어 시설) ○ 광케이블 직선도 및 망구성도 (정보통신 시설) ○ 각 설비별 도면 ○ 급전계통도(전철전력 시설) ○ 전차선로 세부 계통도(전철전력 시설) ○ 설비별 현황 자료(제작・설치년도, 하자기간 등)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작성・시험 자료 ○ 장비조사 위치도 ○ 안전성평가결과 자료 ○ 외관조사 사진첩 (외관조사 사진은 조사모습, 촬영일자가 육안으로 명화히 확인이 가능할 것)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및 검교정 자료 ○ 참여인력의 자격 증빙 ○ 사전조사 자료

(2)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궤도	전철전력 • 신호제어 • 정보통신
□ 서두 ◦ 제출문 ◦ 목표성능 및 성능평가 결과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궤도의 분류코드 및 위치도 ◦ 궤도의 전경사진, 구성품별 사진 ◦ 성능평가 결과 요약문	□ 서두 ◦ 제출문 ◦ 목표성능 및 성능평가 결과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대상 설비의 분류코드 및 위치(km정 등) ◦ 성능평가 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보고서 목차	□ 성능평가의 개요 ○ 성능평가의 목적 ○ 설비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성능평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성능평가 수행체계 ○ 성능평가 수행일정 ○ 표본조사 방법 (표본조사 시)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실계도면, 설계도서 기존 점검・진단・평가 결과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현황 보수・보강・교체 이력 사고・고장・장애 이력 게도의 내진설계 여부 (해당 시) 기타 관련자료	□ 자료수집 및 분석 ◦설비 특성, 현황 및 수량 ◦ 기존 점검・진단・평가 결과 ◦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현황 ◦ 보수・보강・교체 이력 ◦ 사고・고장・장애 이력 ◦ 기타 관련자료
□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성능목표 설정 및 근거 ◦성능목표 달성 방안 ◦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지표	□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성능목표 설정 및 근거 ◦성능목표 달성 방안 ◦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지표
□ 궤도의 안전성능평가 ◦ 표본조사 방법의 적정성 (표본조사 시) ■ 표본선정 근거 및 수량의 적정성 검토 (통과톤수, 노반조건(터널, 교량, 토공 등), 유지보수 이력, 타노선・타기관 사례, 기관 내규 등 반영 여부)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 원인 분석 ◦ 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계측 결과 분석 ◦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필요 시) ◦ 제도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필요 시) ◦ 세분류별 궤도시설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 소분류별 궤도시설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 중분류별 궤도시설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 설비의 안전성능평가 ◦ 표본조사 방법의 적정성 (표본조사 시) − 표본선정 근거 및 수량의 적정성 검토 (운행횟수, 외부환경(터널, 교량, 토공, 실내, 실의, 염해 등), 고장이력, 타노선・타기관 사례, 기관 내규 등 반영 여부)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 원인 분석 ◦ 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분석 및 결과 ◦ 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측정 결과 분석 ◦ 세분류별 설비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 중분류별 설비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 중분류별 설비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 궤도의 내구성능 평가 □ 표본조사 방법의 적정성 (표본조사 시) □ 표본선정 근거 및 수량의 적정성 검토 (통과톤수, 노반조건(터널, 교량, 토공 등), 유지보수 이력, 타노선・타기관 사례, 기관 내규 등 반영 여부) □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분석 및 결과 □ 재료(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의 내구성능 분석 및 결과 □ 세분류별 궤도시설 내구성능 평가 및 분석 □ 소분류별 궤도시설 내구성능 평가 및 분석 □ 중분류별 궤도시설 내구성능 평가 및 분석 □ 중분류별 궤도시설 내구성능 평가 및 분석	□ 설비의 내구성능 평가 ◦ 표본조사 방법의 적정성 (표본조사 시) − 표본전정 근거 및 수량의 적정성 검토 (운행횟수, 외부환경(터널, 교량, 토공, 실내, 실외, 염해 등), 고장이력, 타노선・타기관 사례, 기관 내규 등 반영 여부) ◦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분석 및 결과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측정 결과 분석 ◦ 세분류별 설비 내구성능 평가 및 분석 ◦ 소분류별 설비 내구성능 평가 및 분석 ◦ 중분류별 설비 내구성능 평가 및 분석

	(4곡 중 제4곡)
궤도	전철전력 • 신호제어 • 정보통신
□ 궤도의 사용성능 평가	□ 설비의 사용성능 평가
• 표본조사 방법의 적정성 (표본조사 시)	· 표본조사 방법의 적정성 (표본조사 시)
- 표본선정 근거 및 수량의 적정성 검토	- 표본선정 근거 및 수량의 적정성 검토
(통과톤수, 노반조건(터널, 교량, 토공 등), 유지보수 이	(운행횟수, 외부환경(터널, 교량, 토공, 실내, 실외, 염해
력, 타노선·타기관 사례, 기관 내규 등 반영 여부)	등), 고장이력, 타노선·타기관 사례, 기관 내규 등 반영
•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분석 및 결과	당, 고당이력, 다그전·다기된 자네, 기된 대표 등 현당 여부)
	* * * *
•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 분석	·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분석 및 결과
· 세분류별 궤도시설 사용성능 평가 및 분석	· 세분류별 설비 사용성능 평가 및 분석
· 소분류별 궤도시설 사용성능 평가 및 분석	· 소분류별 설비 사용성능 평가 및 분석
· 중분류별 궤도시설 사용성능 평가 및 분석	· 중분류별 설비 사용성능 평가 및 분석
• 구간별 궤도시설 사용성능 평가	· 구간별 설비 사용성능 평가
□ 종합평가	□ 종합평가
• 표본조사 방법의 적정성 (표본조사 시)	· 표본조사 방법의 적정성 (표본조사 시)
- 표본선정 근거 및 수량의 적정성 검토	- 표본선정 근거 및 수량의 적정성 검토
(통과톤수, 노반조건(터널, 교량, 토공 등), 유지보수 이	(운행횟수, 외부환경(터널, 교량, 토공, 실내, 실외, 염해 등),
력, 타노선·타기관 사례, 기관 내규 등 반영 여부)	고장이력, 타노선・타기관 사례, 기관 내규 등 반영 여부)
• 궤도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결과 분석	· 설비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결과 분석
·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종합한 종합성능등급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종합한 종합성능등급
· 성능평가 결과의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	· 성능평가 결과의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
□ 궤도의 유지관리 전략	□ 설비의 유지관리 전략
· 궤도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 설비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교체 방법 및 전략
· 보수·보강 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보수·교체 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궤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 당해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 종합결론	□ 종합결론
· 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건의사항	◦ 건의사항
□ 부록	□ 부록
∘ 성능평가실시계획서	∘ 성능평가실시계획서
• 대가산정기준	∘ 대가산정기준
· 과업지시서	∘ 과업지시서
· 자체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 자체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 외관조사망도	· 설비별 외관조사도
• 궤도구성품의 역학적 특성 자료	∘ 관구도(신호제어·정보통신 시설)
∘ 궤도 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 연동도표(신호제어 시설)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정보통신망 구성도(정보통신 시설)
• 안전성능 평가 결과 자료	∘ 각 설비별 도면
· 내구성능 평가 결과 자료	· 급전계통도(전철전력 시설)
• 사용성능 평가 결과 자료	· 전차선로 세부 계통도(전철전력 시설)
• 궤도관리대장 사본	· 설비별 현황 자료(제작·설치년도, 하자기간 등)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현장조사 사진은 조사모습,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촬영일자가 육안으로 명확히 확인이 가능할 것)	· 측정 · 시험 자료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및 검교정 자료	· 안전성능 평가 결과 자료
· 참여인력의 자격 증빙	• 내구성능 평가 결과 자료
• 사전조사 자료	• 사용성능 평가 결과 자료
• 기타 참고자료(성능평가 결과와 관련한 설계도서, 감리보	· 외관조사 사진첩 (외관조사 사진은 조사모습, 촬영일자가
고서, 이전의 정기점검등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 포함)	육안으로 명확히 확인이 가능할 것)
., TE TO TOUGO ETTER TO BE THE TO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및 검교정 자료
	· 참여인력의 자격 증빙
	· 사전조사 자료
	. 기타 차고지르

■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 [참고자료 제2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기타 참고자료